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월중)예정 ,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4쪽 제11호의 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4쪽 제11호의 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고, 5쪽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며, 6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10쪽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4쪽 제11호의 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고, 5쪽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며, 6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10쪽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12쪽 <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4쪽 제11호의 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고, 6쪽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하며, 7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8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11쪽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13쪽 <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3쪽 제2호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4쪽 제3호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7쪽 제6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⑧ 중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제3조(「무선설비규칙」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라디오부이”(radio buoy)란”을 ““라디오 부표”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라디오부이”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별표 1의 4MHz 초과 29.7MHz 이하의 무선국 및 무선설비란 제8호 중 “라디오부이국”을 “라디오 부표국”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트랜스폰더”를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 본문 중 “이격된”을 “떨어진”으로 한다.

제4조(「방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진단서류란의 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란의 7)가) 중 “수불장표(受拂帳票)”를 “출납장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기업진단명세서 과목란 제2호의 (2)⑥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1호 중 “지주형”을 “기둥형”으로 한다.

제5조(「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피복류의 지급)”을 “(제복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 피복류를”을 “따라 제복을”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창구 부문 공중실의 비고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기)”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라목 중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한다.

제6조(「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제16조의8제1항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한다.

제30조제7항 중 “풍해·수해·화재”를 “바람, 장마, 홍수, 화재”로 한다.

제7조(「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정 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잔고”를 각각 “잔액”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고가”를 각각 “잔액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잔고가”를 “잔액이”로 한다.

제9조(「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계좌의 잔고증명 청구)”를“(계좌의 잔액증명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고증명”을 “잔액증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잔고가”를 “계좌잔액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계좌
잔고”를 “계좌잔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로, “보전하여야”를 “보전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하여도”를 “경과해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잔고”를 “잔액”
으로 한다.

제10조(「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25조제1항제9호 중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를 “우편날짜

도장을 걸쳐 찍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를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우송되어 온”을 “우편으로 송부된”으로, “회송하여야”를 “회송해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0관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사전송우편물”을 “팩스우편물”로, “모사전송에”를 “팩스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111조제1항 중 “당해우편물”을 “해당 우편물”로, “부전지”를 “쪽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피”를 “개봉”으로, “부전지에 기재하여야”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사제하여”를 “직접 제작하여”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40조의 규정에”를 “제40조에”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를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로, “개피하여”를 “개봉하여”로,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한다.

제11조(「우편환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를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로 한다.

제12조(「전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중 “통달거리(km)”를 “도달거리(km)”로, “양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중 “양각범위(도)”를 “상향각 범위(도)”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 중 “양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중 제2쪽 중 “지표선양각도”를 “지표선상향각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 중 제3쪽 중 “국사”를 “통신국건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13조(「체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체신관서의 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을 “(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15. ~ 22.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라디오 부표”란 ----- ----- ----- -----. 15.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생략)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생략)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라디오부표----- -----

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 -----
3.·4. (생략) ③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제18조(제복의 지급) ----- ----- ----- ----- 따라 제복을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6장 7. ~ 10.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구비서류) ① ----- ----- ----- ----- 제출해야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명함판) 6장 7.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 ----- ----- ----- ----- 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 ----- ----- <u>작성해야</u> ----. 1.·2. (현행과 같음) 3. ----- <u>추정재무상태표</u> ----- ----- -----

<u>폐</u> 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초과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30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u>풍해·수해·화재</u>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및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 ⑩ (생략)	<u>편</u> 또는 <u>폐지</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바람, 장마, 홍수, 화재</u> ---- ----- ----- ----- -----. ⑧ ~ ⑩ (현행과 같음)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이자의 계산) ① (생략)	제9조(이자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u>잔고</u> 에 그 예금 <u>잔고</u> 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u>아니한다</u> .	② ----- <u>잔액</u> ----- ----- ----- ----- <u>않는다</u> .
③·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① ----- ----- ----- -----.
1. <u>잔고가</u>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1. <u>잔액이</u> ----- ----- ---
2. <u>잔고가</u>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u>잔액이</u> ----- ----- -----
3. <u>잔고가</u> 5만원 이상 10만원 미	3. <u>잔액이</u> -----

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 고) ① (생략)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 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u>잔고가</u>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② ----- -----, ----- <u>잔액이</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 (생략)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계좌의 잔고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고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 잔액증명 -----.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①·② (생략)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에 따라 ----- 각 호 -----.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 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것	----- 그렇지 않다.
④ 삭제	1. ----- 계좌잔액이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수료) ① (생략)	제3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고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계좌잔액 -----.
제41조(계좌대월) ① 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제41조(계좌대월)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보전해야 ----- 경과도 ----- 않은 ----- 잔액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합·규격 등) ①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u>발송하여야</u> 하며, 봉합하기가 적합하지 <u>아니한</u>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u>그리하지 아니한다</u> .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합·규격 등) ① ----- ----- <u>발송해야</u> ----- ----- <u>않은 우편</u> <u>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u> -----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그렇지 않다</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u>모사전송우편물</u>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u>팩스우편물</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u>모사전송우편</u> 우체국에서 서신·서류·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u>모사전송기에</u> 전송하는 제도	9. <u>팩스우편</u> ----- ----- ----- <u>팩스</u> ----- -----
10. ~ 22. (생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문자의 정정등) 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u>인장</u>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u>하여야</u> 한다.	제50조(문자의 정정등) ①----- ----- ----- ----- ----- ----- ----- ----- ----- <u>도장</u> ----- ----- <u>해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생략)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u>우편날짜도장으로</u> <u>계인(契印)하여야</u> 한다.	② ----- ----- ----- ----- ----- <u>우편날짜도장을</u> <u>걸</u> <u>쳐 찍어야</u> -----.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	③ ----- -----

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
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생략)

제64조(민원우편물) ① (생략)

②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
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터 우송되어 온 통화증에서 발
급수수료를 뺀 잔액의 통화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
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관 모사전송우편

제69조(모사전송우편) ① 제25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모사전송우
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모사전송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
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
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민원우편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편으로 송부된 -----

회송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0관 팩스우편

제69조(팩스우편) ① -----
----- 팩스우편물-----

팩스에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모사전송우편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① 영
제30조에 따라 우편요금등의 후
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
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삭제

4.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

5.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
환등) ①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당해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부전
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③ 팩스우편-----

-----.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① --

-----.

1.·2.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
스우편물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
환등) ① -----

----- 해당
우편물----- 쫓지

-----.

② -----

우편물을 <u>개피</u> 한 자는 다시 봉합한 후 그 사유를 <u>부전지에 기재하여야</u> 한다.	----- <u>개봉</u> ----- ----- <u>쪽지에 적어 붙여야</u> -----.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① (생략)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서함의 사용자는 <u>제1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사서함의 열쇠를 <u>사제하여</u> 사용할 수 있다.	② ----- <u>제1항에</u> <u>도</u> ----- ----- <u>직접 제작하여</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① (생략)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배달우체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어 법 <u>제40조의 규정에</u>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u>교부하여야</u> 하며, 그러하지 <u>아니하다고</u> 인정하는 때에는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동 우편물을 <u>개피하여</u> 손	② ----- <u>제1항에 따</u> <u>른</u> ----- ----- ----- <u>제40조에</u> ----- ----- ----- ----- ----- <u>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u> ----- ----- ----- ----- ----- ----- <u>개봉하여</u> ----

해의 유무를 <u>검사하여야</u> 한다.	----- <u>검사해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 (생략)	제13조(도장을 소지하지 않은자의 청구) (현행과 같음)

체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 ①채권보관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인장은 최초에 사용한 인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 ① ----- ----- ----- ----- ----- ----- ----- 도장----- 도장----- ----- ----- ----- ②·③ (현행과 같음)